

결 정

2018 - 2004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
朝鮮日報 발행인 홍 준 호

주 문

朝鮮日報 2017년 12월 14일자 B12면 「“여의도 면적의 약 5.5배” “미군 해외
기지 중 최대규모” “주한미군 평택시대~”/해나카운티 7차」 제목의 광고에 대하
여 ‘주의’ 조치한다.

이 유

朝鮮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평택 미 군무원 전용 렌탈 하우스를 분양한다는 내
용이다.

광고는 『년 12~15%대의 안정적인 투자수익률』, 『연 \$42,000~\$45,000(2017
년 6월 렌탈계약기준)』 이라고 선전하면서 『SOFA 협정으로 45년간 안정적인 임
대수요 확보』 라고 기술하고 있다.

그러나 광고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
않았다. 따라서 이들 광고는 거짓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
에 관한 법률」 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, 광고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
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.

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, 나아가 신문
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, 3, 4, 신문광고윤리실천요
강 강령 4의 (4)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1월 10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 원 장 김 용 담 김용담

위	원	정	승	호	정승호
		장	명	국	장명국
		이	동	현	이동현
		장	인	철	장인철
		강		희	강희
		김	영	모	김영모
		박	현	갑	박현갑
		박	미	경	박미경

○ 적용 조항

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.

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.

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.

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(4)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